집행기준 44-0-2 —— 합병의 경우 합병당사자별 과세체계 합병 시 합병당사자별 과세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. [비적격합병인 경우] • 합병매수차손익 계상 및 상각 [피합병법인 순자산시가- 피합병 법인에게 지급한 양도가액] ㉠ 양도가액 < 순자산시가 ：합병매수차익으로 계상 후 5년간 균등 익금산입 ㉡ 양도가액 > 순자산시가 ：합병매수차손으로 계상 후 5년간 균등 손금산입 [적격합병인 경우] • 자산조정계정 계상 및 상각 \*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계상하고 피합병법인의 장부 가액의 차액을 자산조정계정 으로 계상 ㉠ 차액 > 0 ：익금산입 ㉡ 차액 < 0 ：손금산입 \* 자산조정계정은 이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거나 가산, 처분시 잔액은 익금 또는 손금 산입 피 합 병 법 인 •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[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 가액 -피합병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] \* 적격합병요건 충족시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본다. • 합병대가에 대한 의제배당 [합병대가 -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] \* 적격합병요건 충족시 합병 대가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본다 합 병 법 인 피합병법인 주주 구주식 합병대가 자산･부채 승계 합병대가